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7길 14 엘림빌딩 3층 전화 (02)523-9752 팩스 (02)766-6025
http://www.pharmacist.or.kr . E-mail:kpkyp@chol.com

문서번호 건약231122-02
시행일자 2023. 11. 22.
발 신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담당: 이동근 사무국장, 010-9697-0525)
수 신 각 언론사 담당자
제 목 [보도자료] 제약사가 제공한 금품을 투명하게 볼 수 있게 지출보고서 공개제도 개선하라

[보도자료]

제약사가 제공한 금품을 투명하게 볼 수 있게 지출보고서 공개제도 개선하라

-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금품류 제공받은 의료인 및 요양기관 정보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 제약사의 기부 명목, 자문 명목, 학술대회 지원 명목 금품류 제공이 불법리베이트가 아니라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오늘(22일) 2021년 7월 개정된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제조·수입 및 판매자(이하 제약사 등)가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 학회에 제공한 금품류 등의 경제적 이익 제공을 작성한 보고서인 지출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하도록 한 ‘경제적 이익제공 내역의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이하 지출보고서 공개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였다.

본래 제약사 등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금전·물품·편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견본품 제공 등 일부 경우에 한하여 금전·물품·편익을 제공하더라도 인정하고 대신 제공내역을 정리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법 리베이트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의약품 사용이 환자가 아닌 제 3자의 이익으로 변질되는 등 유통질서가 문란해지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해당 지출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하도록 한 법안이 2021년 7월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그리고 유예기간을 걸쳐 내년 상반기에 지출보고서 공개제도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를 미국의 지출보고서 공개제도인 선샤인 액트를 따서 ‘K-선샤인 액트’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하였다. 하지만 지난 8월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 관련한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지출보고서 공개제도의 입법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며, 뉴스타파 등 많은 언론사가 개선을 요청하였다.

건약은 내년 본격 시행될 지출보고서 공개제도가 입법취지에 맞게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의료공급체계가 되도록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첫째, 지출보고서 공개제도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의료인 및 요양기관 정보는 일반에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제약사 등은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 금품류 등의 경제적 이익제공 내용을 아래 양식과 같이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지출보고서를 공개할 때 금품류 등을 받은 의료인 및 요양기관 등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공개제도를 만든 입법 취지의 핵심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행정규칙을 개정하면서 단서조항으로 ‘지출보고서의 내역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특정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공개해야 한다’를 포함함으로써, 사실상 제약사 등이 경영상·영업상 비밀이라는 명목으로 많은 부분을 비식별처리한 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변경하였다.

하지만 의약품 유통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지출보고서 공개제도에서 의료인 및 요양기관 등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해당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경제적 이익을 받았을 때 향후에 의료인이 특정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과의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환자들이 건강권 측면의 손해를 받았을 때 이를 규명하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유사한 공개제도를 운영하는 미국, 유럽 뿐만 아니라 자율적 공개제도를 운영하는 일본도 의료인 및 요양기관의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회에 의한 입법의 취지를 하위 법령인 행정규칙이 위배하는 조치를 보건복지부는 취해서는 안된다.

< 지출보고서 제출 양식 >

1. 견본품 제공								
① 번호	요양기관 정보		의약품 정보				⑨ 제공일자	
	②	③	④	⑤	⑥	⑦		⑧

	기관명칭	요양기관기 호	제품명 (표준코드명 칭)	표준코드 (제품코드)	포장내 총수량(규격)	제공수량	계(⑥×⑦)	
1	AA병원	12345678	ABCD정	8806421602 504	6	2	12	2022-01-04

2. 학술대회 지원

① 번호	학술대회 정보					⑥ 지원금액
	② 주최기관	③ 대회명칭	④ 대회장소	⑤ 대회일시		
1	Japan college of abcdology, 대한ab학회	61st Meeting of JCA	일본/후쿠오카	2022-04-20~2022 -04-22	1,000,000	
2	한국abcd학회	의약품 학술대회	대한민국/서울	2022-08-15	500,000	

3. 임상시험의 지원

① 번호	임상시험 정보				임상시험 책임자		공동연구자		지원내역			
	② 명칭	③ 구분(1 /2/3)	④ 승인 번호	⑤ 승인 일자	⑥ 성명	⑦ 소속	⑧ 성명	⑨ 소속	⑩ 연구비	의약품		⑬ 계약 일
										⑪ 제품 명	⑫ 수량	
1	혈관세포의 KA1 enriched exosome 분비기전과 특성 분석연구	2	CMC- 2017- 05-21 3	2022- 07-09	장아영	AA병 원	김민열, 김은우	BA병 원, BC 병원	20,000 ,000	RGH 정	100	2022- 08-04

4. 제품 설명회

(가. 복수 요양기관 대상 제품설명회)

① 번호	② 제품명(표준코드명칭)	의료인 정보		지원금액				⑨ 장소	⑩ 일시
		③ 성명	④ 소속	⑤ 교통비	⑥ 기념품 비	⑦ 숙박비	⑧ 식음료비		
1	BBB원정25mg, BBB원정50mg	장아영	AA병원	20,000	50,000	40,000	100,000	BA호 텔	2022-07-15 19:00~2022 -7-16 10:00
2	BBB원정25mg, BBB원정50mg	김민열	BB병원	50,000	30,000	40,000	100,000	BA호 텔	2022-07-15 19:00~2022 -7-16 10:00

(나. 개별 요양기관 방문 제품설명회)

① 번호	② 제품명(표준코드명칭)	요양기관 정보		의료인 정보	⑥ 지원금액 (식음료)	⑦ 장소	⑧ 일시
		③ 기관명칭	④ 요양기관기호	⑤ 성명			
1	CCC원정25mg, CCC원정50mg	CC병원	12345678	김민열,	100,000	CC병원	2022-07-16

				장아영			

5. 시판 후 조사

① 번호	의약품 정보		의료인 정보		지원내역	
	② 제품명(표준코드명칭)	③ 재심사대상여부	④ 성명	⑤ 소속	⑥ 단가/건	⑦ 건수
1	ZZZ정	비대상	김민열	AA병원	50,000	3
2	EFG정	대상	김은우	BB병원	300,000	75

6.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① 번호	요양기관 정보		계약 정보		
	② 기관명칭	③ 요양기관기호	④ 거래일자	⑤ 결제일자	⑥ 할인율(%)
1	EE약국	45678901	20220501	20220512	1.75
2	FF약국	56789123	20220930	20221101	1.2

둘째,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상 허용하는 경제적 이익제공과 공정경쟁거래법 하에 공정경쟁규약에서 허용하는 경제적 이익제공의 비일치를 개선해야 한다.

제약사 등의 불법 리베이트는 주요하게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복지부 등)가 이를 적발하여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경쟁거래법 하에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및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이하 공정경쟁규약)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복지부 등은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하에 행정규칙을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적발 기준도 아래와 같이 서로 다르다. 업무연계를 통해 제약사 등의 불법 리베이트를 공동 대응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다른 기준으로 불법성을 따지는 것은 처분대상인 제약사나 의료인도 혼동이 생길 우려가 크다.

뿐만 아니라 이는 지출보고서 공개제도 운영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사실상 공정경쟁규약이 허용하는 금품류 등 경제적 이익제공 범위가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보다 훨씬 넓기 때문에 제약사는 공정경쟁규약상 허용되는 범위의 경제적 이익제공을 하더라도 지출보고서 제출 범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가령 제약사가 요양기관 관련하여 자선목적의 기부행위를 하거나 학회 학술대회 개최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의료인에게 시장조사 또는 강연 및 자문료 명목으로 금품류를 제공하고 있더라도 지출보고서 공개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앞으로 이러한 불

일치가 유지되면 많은 제약사 등이 지출보고서 작성을 회피하기 위해 보고의무가 없는 경제적 이익 제공을 크게 늘릴 우려도 크다. 그러므로 보건복지부는 하루속히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하여 공정경쟁규약과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하에 시행규칙이 허용하는 경제적 이익제공의 범위를 통일시키고, 만약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하에 시행규칙이 허용하는 범위가 확대된다면 확대되는 범위에 맞게 지출보고서 작성의무 항목도 확대되어야 한다.

<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과 공정경쟁규약 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비교 >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제공 행위 유형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공정경쟁규약
건본품 제공	건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학술대회 참가지원
임상시험 지원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제공
	시판후조사 외의 임상활동
제품설명회	자사제품 설명회
시판후 조사	시판후 조사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
기타	-
-	기부행위
-	학술대회 개최·운영 지원
-	시장조사
-	전시·광고
-	강연 및 자문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국회의원실을 통해 수차례 현행 지출보고서 제도의 운영에 대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돌아오는 복지부의 답변은 ‘법적 목적이 다르므로 반드시 그 범위가 일치하기 어렵다’, ‘이해관계자, 전문가, 관련 단체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차질없이 공개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알맹이 없는 답변태도로 일관했다. 이에 건약은 지출보고서 공개제도가 입법취지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이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앞으로도 관련 대응을 모색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제약사 등의 입장에서 지출보고서 공개제도가 무력화하는 운영을 멈춰야 한다. 환자와 국민의 입장에서 의약품 시장질서가 투명성 있게 확립될 수 있도록 지출보고서 공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2023년 11월 22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 ▣ 첨부1: '경제적 이익제공 내역의 지출보고서 공개'에 대한 의견서
- ▣ 첨부2: 지출보고서에 관한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2023.5)

<첨부> ‘경제적 이익제공 내역의 지출보고서 공개’에 대한 의견서

‘경제적 이익제공 내역의 지출보고서 공개’에 대한 의견

1. 의견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의약품공급자 및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이하 의약품 공급자 등)이 작성한 지출보고서의 공개에 경제적 이익을 받은 보건의료인 이름 및 요양기관의 명칭이 반드시 공개되어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공정거래법 제 23조에 따른 공정경쟁규약’과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에 따른 시행규칙’이 허용하는 경제적 이익제공의 범위가 다른 점을 하루 속히 개선할 것을 요구합니다.

2. 배경

2021년 7월 ‘경제적 이익제공 내역의 지출보고서 공개 의무’ 조항을 담은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이 공포되었습니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제조·수입 및 판매하는 경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금전·물품·편익 등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견본품 제공 등 일부 경우에 한하여 경제적 이익 제공을 인정하며, 의약품 공급자 등은 제공내역(지출보고서)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는 지출보고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를 일반에 공개하여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지출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하도록 법안이 개정된 것은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을 웹사이트를 통해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미국 및 유럽의 입법례에 비추어 타당하고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유통질서를 확립 및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려는 입법 취지가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 8월 지출보고서의 내역 중 일부 정보를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등을 이유로 비공개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이미 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 및 유럽을 포함하여 자율적으로 공개제도를 운영하는 일본의 경우와 비추어 후퇴된 내용입니다.

또한 지출보고서 제출 내역은 광범위하게 의약품 공급자 등이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제공에 비해 협소하게 운영된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상 허용하는 경제적 이익제공은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 기타(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

용할인, 구매 전 의료기기 성능 확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약품 공급자가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은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 하에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및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이하 공정경쟁규약)에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경쟁규약에서 허용하는 경제적 이익제공은 약사법에서 허용하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개최, 운영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후 조사 이외에도 기부행위, 학술대회 개최 운영·지원, 시장조사, 전시·광고, 강연 및 자문은 빠져있습니다(아래 <표> 참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업무연계를 통해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법령이 불법을 다르게 처벌하고 있다는 점은 처분 대상인 의약품 공급자 등의 입장에서는 혼동이 생길 수 있을뿐만 아니라 지출보고서 내역에서 포함되어야 할 기부행위 등의 경제적 이익제공이 포함되지 않아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제도의 취지가 제한될까 우려됩니다.

3. 상세 내용

첫째,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지출보고서 실태조사의 공개범위에 의료인 및 요양기관 정보를 일반에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의약품 공급자 등이 작성해야 하는 지출보고서는 주로 지원을 받은 의료인 및 요양기관의 정보와 관련 지원 내용을 적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령 제품설명회 참여와 관련하여 보건 의료인이 지원을 받은 경우 성명, 소속, 각각의 지원금액(교통비, 기념품비, 숙박비, 식음료비), 장소, 일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지출보고서 공개제도에서 의료인 및 요양기관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해당 의료기관이 또는 의료인이 각종 경제적 이익제공을 받았을 때 향후에 그 의료인이 경제적 이익제공에 영향을 받아 특정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을 파악하거나 의료인이 특정 제품을 선호함으로써 환자들이 건강권 측면의 손해를 받았을 때 이를 규명하는데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적 이익제공을 받은 의료인 및 요양기관의 정보는 미국 및 유럽 뿐만 아니라 자율적으로 공개제도를 운영하는 일본도 투명하게 공개하는 정보입니다. 그러므로 경영상·영업상 비밀 등의 핑계로 해당 정보를 비식별화한다면, 하위법령인 행정규칙이 지출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국회에 의한 입법을 위배하는 조치로 봐야 합니다.

둘째,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상 허용하는 경제적 이익제공과 공정거래법 하에 공정경쟁규약에서 허용하는 경제적 이익제공의 비밀치를 개선해야 합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불법리베이트를 적발할 때 기준으로 삼는 공정경쟁규약은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불법리베이트를 적발할 때 기준으로 삼는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하의 행정규칙에 비해 협소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법리베이트의 적발은 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서 이뤄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하여 처분하면,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 사건 통보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하고,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적발내용에 따라 의료인 및 의약품 공급자 등의 후속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공정경쟁규약이 사실상 의약품 공급자 등의 경제적 이익제공이 불법인지, 합법인지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약사법이나 의료기기법 하의 시행규칙에 따라 적용하여 적발에 나선다면, 공정경쟁규약 상 합법적인 경제적 이익제공이 순식간에 불법적 리베이트가 되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업무연계를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처분대상이 되는 의약품 공급자 등과 의료인은 두 가지 서로 다른 기준으로 혼동할 우려가 큼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현장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기부행위, 학술대회 개최 운영·지원, 전시·광고, 시장조사, 강연 및 자문을 통한 경제적 이익제공들이 모두 지출보고서 보고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더욱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의약품 공급자는 요양기관에 자선적 목적으로 기부행위를 하더라도, 국내 개최하는 학술대회에 개최·운영비를 지원하더라도, 시장조사라는 명목으로 의료인에게 금품류를 제공하더라도, 의료인에게 강연 또는 자문료 명목으로 금품류를 제공하더라도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상 지출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불일치가 유지된다면 많은 의약품 공급자들은 지출보고서 공개제도를 회피하여 다음과 같은 보고의무가 없는 경제적 이익제공을 크게 늘릴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건복지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조하여 공정경쟁규약과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서 허용하는 경제적 이익제공 등의 범위를 하루 속히 통일해야 합니다.

<붙임 1> 표.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과 공정경쟁규약 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비교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공정경쟁규약	
행위 유형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행위유형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견본품 제공	최소 포장단위로 견본품 제공	견본품 제공	최소 포장단위로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최하는 학술 연구 목적의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발표자, 좌장, 토론자가 학술대회 주최자로부터 지원받는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록비 용도의 실제 비용	학술대회 참가지원	국내외 학술대회에 발표자, 좌장, 토론자가 주최자로부터 지원받는 실비 상당의 교통비, 등록비, 식대, 숙박비에 한하여 지원하며 사업자는 협회에 기탁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함.(여행 등 향응이나 접대와 결부되어선 안되며, 동반자 지원도 안됨)
임상시험 지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상시험 또는 임상연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수량의 의약품과 적절한 연구비(사전 승인받은 비임상시험 포함)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제공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수량의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음.
		시판후조사 외의 임상활동	사업자는 승인받은 임상시험의 경우 임상활동의 연구계약에 의해 합당한 범위 내에 적절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음.
제품설명회	사업자가 여러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의약품에 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제품설명회에 참석한 의사 등에게 제공하는 실제 비용의 교통비 등(10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제공하는 경우 월 4회 이내로 한정)	자사제품 설명회	사업자는 복수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실비 상당의 여비, 숙박, 식음료 및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음. (사회통념상, 비용 제한 없음)
시판후 조사	재심사 대상 의약품의 시판후조사에 참여하는 의료인에 제공하는 사례보고서에 대한 건당 5만원 이하의 사례비	시판후 조사	재심사 대상 의약품의 시판후조사에 참여하는 보건의료전문가에 대한 보수 제공 (비용 제한 없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거래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제하는 경우 0.6%, 2개월 이내 결제하는 경우 1.2%, 1개월 이내 결제	-	-

	하는 경우 1.8%까지 비용할인		
-	-	기부행위	사업자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요양기관 등에 의약학적, 교육적, 자선적 목적으로 기부행위를 할 수 있다.
-	-	학술대회 개최·운영 지원	국내에서 개최하는 학술대회의 개최 및 운영을 기부, 식음료 제공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지원(학술대회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 협회 회비 및 등록비로 충당하는 것을 조건으로 인정함)
-	-	시장조사	사업자는 시장조사의 사례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금품류를 제공할 수 있음.(시장 조사가 환자의 이익을 제고하기 위해 유용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활동으로만)
-	-	전시·광고	사업자는 보건의료전문가를 대상으로 의약학적 지식을 확대하고 환자의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 전시 또는 광고할 수 있다. 비용의 지급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여야 한다.(비용 제한 없음)
-	-	강연 및 자문	사업자는 보건의료전문가에게 강연 또는 자문을 의뢰하며, 강연료는 수행한 강의 활동에 기초로 산정되어야 한다. (강연료 제한 없음)
기타	금융회사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지급하는 의약품 결제금액의 1퍼센트 이하의 적립점수	-	-